



ISM/ISPS/MLC 동향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
Gangseo-gu, Busan, 618-814
Republic of Korea

Phone : +82-70-8799-8342
Fax : +82-70-8799-8319
E-mail: ysmoon@krs.co.kr
Person in charge: Moon Youngsu

수신(Recipients): ISM 담당자

번호(No.) : 2020-05 날짜(Date) : 2020년 12월 1일

제 목(subject):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 절차서 샘플 배포

1. 해운산업이 디지털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육, 해상 간 정보전송이 확산되면서 선박과 항만시설에 해킹, 정보유출, 사이버 테러가 심각한 보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IMO 제98차 MSC회의에서 "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DOC 연차심사 시까지 회사 안전관리 시스템 상에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"라고 결의하였습니다.

2. 마셜 아일랜드, 사이프러스, 호주, 바누아투, 싱가포르 기국은 반드시 사이버 리스크 관리절차를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(SMS)에 수립·시행토록 강제화하였으며, 대한민국을 포함한 그 밖의 기국들은 관련절차를 수립·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.

3. 특히, 2021년 이후 선박 사이버보안 관리 미흡에 대하여 PSC 결함으로 지적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, 사이버 리스크 관리절차 수립 및 시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
*** 최근 USCG 동향 ***

선박 사이버보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무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Vessel Cyber Risk Management Work Instruction(CVC-WI-027(1))을 발표, 동 Instruction은 U.S.선박 및 U.S.항만에 기항하는 선박들에게 적용일 (2021.1)부터 적용하는 점검항목을 제시하며, 회사 안전관리 시스템 상에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출항정지 될 수 있다고 함.

4. 이에, 우리 선급에서는 해운선사의 효과적인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및 관리를 위하여 "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 절차서 샘플"을 개발하여 배포하니 사이버 리스크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Cyber Risk Management Procedure – 1부

(끝)

협약심사팀장